

#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10)

### 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8. 1. 30.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'98. 1. 31.
- 라. 위원회 심사 : '98. 2. 20.

#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최병수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호 내지 제9호중 제9호의 "기타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"을 "기타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"으로 '97. 9. 9(대통령령 제15476호) 제정됨에 따라 중구건축조례 제4조(기능)로 규정하고 있던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, 7층이상 10층이하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고도지구내 15미터 및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과 전통사찰 전면에 건축하는 건축물임.

##### 다. 관련법규

-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
-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 제4조

#### 4. 검토보고요지

- 법 제정 당초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 울산광역시 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110

제출년월일 : '98. 1

제출자 :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호내지제9호중, 제9호의 "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"을 "기타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"으로 1997년9월9일(대통령령 제1547 6호) 개정됨에 따라.
- 당초 "기타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"의 규정에의거 중구건축조례 제4조(기능)로 규정하고있던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거 자치단체의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삭제
  - 7층이상10층이하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.
  - 고도지구내 15미터 및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과 전통사찰전면에 건축하는 건축물.

### 3. 관련법규

- 건축법 제4조(건축위원회)
-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(건축위원회)

### 4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# 5. 신.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6. 기타참고사항 : 붙임

##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기능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능)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과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내지제3조(생략)	제1조내지제3조(현행과같음)
<p>제4조(기능)①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다만 공장 및 창고 건축물과 공공업무시설, 대학교·군사시설건축물을 제외한다.</p> <p>1. 7층이상 10층이하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(공동주택은 5층 이상이거나 20세대 이상일경우에 한한다)</p> <p>2. 고도지구내 15미터 및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과 전통사찰전면에 건축하는 건축물</p> <p>3. 기타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②(생략) ③(생략)</p>	<p>제4조(기능)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(삭제)</p> <p>2.(삭제)</p> <p>3.(삭제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</p>
제5조내지제30조(생략)	제5조내지제30조(현행과같음)